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4. 29

다. 상 정 일 자 : 2003. 4. 29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조 규 문

나. 개정사유

- 현행 조례 제3조(복무) 제2항에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장의 복무와 관련된 조문중 행정의 협조자인 이장에게 복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므로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3조 제1항중 '임부에 성실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중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조례안은 제3조 복부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의견이 없음.
- 본 개정안의 범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견"

첨 부 :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항 및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 ②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부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p> <p>②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p>	<p>제3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p> <p>②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p>